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6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전용기·김원이·김승원

오영환 · 홍익표 · 김병욱

정청래 · 김종민 · 박용진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 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까지 가능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 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 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므로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비례하여 큼. 또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에 비해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

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301」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라 한다)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을 "지방의회의 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 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 자"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를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 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부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	
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	
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보자"라 한다)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라 한
	<u>다)</u>
<u><신 설></u>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
	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지
	<u>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라 한</u>
	<u>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	2
간 <u>(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u>	<u>(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u>
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	<u>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u>
<u>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u>	<u> 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u>
<u>방자치단체장후보자</u> 의 후원회	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
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단체장후보자등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기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u>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u> 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 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 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 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
원회는 각각 합하여
②

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 • 대 통령선거경선후보자 · 당대표경 선후보자등 •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 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 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 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 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 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 (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 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 부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 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 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 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 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 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 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

<u>(대통령후보자등·대</u>
통령선거경선후보자 • 당대표경
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
<u>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u>
③・④ (현행과 같음)
데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u>.</u>

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 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 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 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 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 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 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 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 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 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 (생 략)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
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예비후
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
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
<u>후보자·지방의회의원후보자·</u>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대통
령예비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의회의
원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자치
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
통령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후
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보
<u>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u>
<u> 자후원회</u>
② (현행과 같음)
3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u>대통령</u> <u>후보자등 · 국회의원후보자등</u> <u>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u>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 ④ (생략)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저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대통령예비후보자가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한다.

1. (현행과 같음)
2 <u>대통령</u>
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④ (현행과 같음)
세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u>
대표경선후보자등 • 대통령예비
후보자 • 국회의원예비후보자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